



## 일본 인권옹호법안의 주요내용과 전망

정보신청기관 : 법무부 인권옹호과

### I. 법안을 둘러싼 일본 내의 상황

「인권옹호법안(人權擁護法案)」은 그 제안 이  
유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인권침해 현상과 그  
밖의 인권옹호에 관한 국내·외의 정세에 비추  
어, 인권침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  
려가 있는 피해의 적정하고 신속한 구제 또는 그  
실효적인 예방 및 인권존중의 이념을 보급하기”  
위하여 독립 행정위원회인 인권위원회를 중심으  
로 인권옹호를 위한 조직 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 최초의 포괄적인 인권 관련

법률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1997  
년 초안이 마련된 이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법안 내용의 구체적 타당성 여부보다는 이를 둘러  
싼 일본 내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의 대립과  
급변하는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한 것  
이라고 할 수 있겠다.

1996년(平成8年) 당시 총리성(総理府) 산하  
지역개선대책협의회(地域改善対策協議会)는 향  
후 동화대책(同和対策)<sup>1)</sup> 방안에 대한 의견을 보  
고하였고,<sup>2)</sup> 이 의견에 따라 제1차 하시모토(橋



- 1) ‘동화대책(사업)이란 차별을 당하고 있는 부락(被差別部落)의 환경개선과 차별해소를 목적으로 열린 일련의 사업을 의미한다. 이 사업은 1969년 국회에서 통과된 「동화대책사업특별조치법(同和対策事業特別措置法)」에 따라 당초 10년간의 한시법으로 시작됐지만, 이후 각종 법안이 제출되어 2002년에 종국적으로 폐지될 때까지 33년간 약 15조 엔으로 그 규모가 확장되었다. 말기에는 일부 사람만이 기업의 이익을 독점하는 동화이권(同和利権)과 본래 사업대상자격 여부에 관계없이 동화부락 관계를 자처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동화행위가 문제가 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근거 법규의 만료 후에도 일정한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 地域改善対策協議会, 同和問題の早期解決に向けた今後の方策の基本的な在り方について(意見具申), 1996年(平成8年) 5月 17日. 이 의견보고의 목적은 동화대책사업에 관한 특별 조치법인 「지역개선 대책 특정 사업에 관한 국가제정상의 특별 조치에 관한 법률(地域改善対策特定事業に係る国の財政上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을 1997년 3월 말에 폐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 내각이 국무회의의 결정을 통해서 동 법안에 대한 준비를 한 것이 동 법안의 출발점이 되었다.<sup>3)</sup> 이 국무회의에서는 동화대책의 향후방안으로 ‘인권 교육을 위한 UN 10년(人權教育のための国連10年)’<sup>4)</sup>에 관한 시책의 추진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논의하였다. 다음 해 5월 구체적인 방안을 심의하기 위해 당시 마쓰우라 이사오(松浦 功) 법무대신이 법무성 인권옹호추진심의회(人權擁護推進審議會)<sup>5)</sup>에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 피해자를 충실하게 구제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사항(人權が侵害された場合における被害者の救済に関する施策の充実に関する基本的事項)”을 내용으로 자문을 실시했다.<sup>6)</sup> 동 심의회는 이 자문요청에 대하여 3회에 걸친 심의결과를 제시하였는데,<sup>7)</sup> 그 핵심적 내용은 법무성의 인권옹호국(人權擁護

局)과 인권옹호위원(人權擁護委員)제도를 중심으로 한 당시의 인권구제제도가 실효적인 인권구제라는 관점에서 부족한 점이 많고, 따라서 ‘인권위원회(가칭)’라는 별도의 기관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인권구제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sup>8)</sup> 법무성은 이 답신에 근거하여 ‘국가 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国内人權機構の地位に関する原則, 이른바 ‘과리 원칙’)’<sup>9)</sup> 등을 토대로 새로운 인권구제제도의 창설에 관한 법안 작성에 착수하였고, 이 결과로 「인권옹호법안」이 마련되었다.

「인권옹호법안」은 2002년 3월 8일, 제1차 고이즈미(小泉) 내각에 의하여 제154회 정기국회(常会)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동 법안에 대한 언론기관과 야당의 반대는 매우 거셌는데, 이는 동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중 언론기관에 의



- 3) 同和問題の早期解決に向けた今後の方策について, 1996年(平成8年) 7月 26日 閣議決定.
- 4) 인권 교육을 위한 UN의 10년 계획은 UN총회에서 결정한 1995년에서 2004년까지의 10년을 의미한다.
- 5) 그해 「인권옹호시책추진법(人權擁護施策推進法)」(平成8年法律 第120号) 제3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구.
- 6) 인권옹호추진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의 모인(犯罪被害者の会), 전국 자유동화회(全国自由同和会), 전국 부락 해방 운동 연합회(全国部落解放運動連合会), 부락 해방 동맹(部落解放同盟), 일본 신문 협회(日本新聞協会), 홋카이도 우타리 협회(北海道ウタリ協会),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在日本大韓国民団), 주한 일본 조선인 총연합위원회(在日本朝鮮人総聯合会), 방송과 인권 등 권리에 관한 위원회기구(放送と人權等総利に関する委員会機構) 등 많은 단체와 함께 각종 인권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벌였다.
- 7) “인권존중의 이념에 대한 국민 상호간의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교육과 계몽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人權尊重の理念に関する国民相互の理解を深めるための教育及び啓蒙に関する施策の総合的な推進に関する基本的事項について)”(1999년 7월 29일자), “인권구제제도 존치방안에 관하여(人權救済制度の在り方について)”(2001년 5월 25일자) 및 “인권옹호위원제도의 개혁에 관하여(人權擁護委員制度の改革について)”(2001년 12월 21일자)가 이에 해당한다.
- 8) 人權擁護推進審議會会長談話, 2001年(平成13年) 5月 25日.
- 9) 国連人權委員会決議 1992年3月3日 1992/54附属文書(经济社会理事会公式記録1992年補足No.2 (E/1992/22) 第II部第A節) 總會決議1993年12月20日 48/134附属文書.

한 인권침해를 소환요구(出頭要求)·출입검사(立入検査) 등의 특별조사가 포함된 특별구제 절차의 대상으로 한 점,<sup>10)</sup> 인권위원회를 법무성의 외국(外局)으로 설치한 점을 비롯하여 보도의 자유·취재의 자유·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등에 대한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sup>11)</sup> 이에 따라 법안은 제154회 정기국회, 제155회 임시국회(臨時會), 제156회 정기국회 3회기를 거쳐 연속 심의되었으나 의결되지 않았고, 2003년 10월 중의원(衆議院) 해산에 따라 폐안(廢案)되었다.

그러나 폐안된 이후에도 정부·여당에서는 동 법안에 대한 검토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언론기관에 의한 침해를 특별구제의 대상으로 하지 않도록 변경하는 등 법안을 재상정하기 위한 시도는 계속되었다. 그리고 2005년 2월 정부·여당은 법안을 일부 수정하여, 같은 해 제162회 정기국회에 법안을 다시 상정할 방침을 일단 결정하였다. 그러나 법안에 대한 논의를 검토한 자민당

법무부회(自民堂法務部會)의 의사진행이 법안추진과의 코가 마코도(古賀 誠) 전 자민당 간사장 등에 의해서 억지로 행해졌다는 이유로 일부 의원들<sup>12)</sup>의 반대의견이 표출된 결과, 당 집행부는 같은 해 7월 법안 제출을 포기한 상태이다.<sup>13)</sup>

## II. 법안의 내용

### 1. 총 칙

#### 가. 개 관

동 법안은 총 7장 8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제1조 내지 제4조)의 총칙규정을 시작으로, 제2장(제5조 내지 제20조)에서는 인권위원회(人權委員會)에 대하여, 제3장(제21조 내지 제36조)에서는 인권옹호위원(人權擁護委員)에 대하여, 제4장(제37조 내지 제65조)에서



10) 이는 범죄보도와 관련,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와 집단적 과열 취재(メディア・スクラム) 등으로 불리는 과도한 취재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물론 이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소송 절차에 따라 그 중지 또는 피해의 회복을 구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피해자는 소송 절차에 호소할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언론기관 자체의 자주적인 예방 구조조치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있다. 따라서 출판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려를 하면서 특별 구제절차 속에서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언론 피해 구제를 도모하려고 했던 것이다. 法務省 홈페이지, 人權擁護法案に関するQ&A <<http://www.moj.go.jp/JINKEN/jinken83.html>> 참조.

11) 당시 여당인 자유민주당(自由民主党)·공명당(公明党)은 많은 법안에 동참하고, 야당인 민주당(民主党), 사회민주당(社会民主党), 일본공산당(日本共産党) 등은 반대했다.

12) 법안신중파인 히라누마 다케오(平沼 越夫) 중의원 의원(법안에 반대 진정인 인권 옹호를 생각하는 간담회 회장), 가메이 이쿠오(亀井 郁夫) 참의원 의원, 키우치 미노루(城内 実) 중의원 의원, 에토우 세이이치(衛藤 晟一) 중의원 의원 등.

13) 産経新聞、日本文化チャンネル桜等のメディアや、西村幸祐、櫻井よしこ、西尾幹二などの文筆家、インターネット上のブログや掲示板でも、この動きに同調して、反対運動が活発化した。^ 산케이 신문, 일본 문화 채널 벚꽃 등의 미디어, Nishimura Yoshiyuki祐, Takahiroよしこ, 니시우 간 두 등 문필가 인터넷 블로그와 게시판에서도 이 운동에 동조하고, 반대 운동이 활발했다.

〈표 1〉 인권옹호법안의 구조

목 차	표 제	해당 조문
제 1 장	총칙	제 1 조~제 4 조
제 2 장	인권위원회	제 5 조~제 20 조
제 3 장	인권옹호위원	제 21 조~제 36 조
제 4 장	인권구제절차	
제 1 절	총칙	제 37 조~제 38 조
제 2 절	일반구제절차	제 39 조~제 41 조
제 3 절	특별구제절차	
제 1 관	통칙	제 42 조~제 44 조
제 2 관	조정 및 중재	
제 1 목	통칙	제 45 조~제 49 조
제 2 목	조정	제 50 조~제 56 조
제 3 목	중재	제 57 조~제 59 조
제 3 관	권고 및 그 공표	제 60 조~제 61 조
제 4 관	소송지원	제 62 조~제 63 조
제 5 관	차별조장행위 등의 금지 등	제 64 조~제 65 조
제 5 장	노동관련 특별인권침해 및 선원관련 특별인권침해에 관한 특례	제 66 조~제 68 조
제 1 절	총칙	
제 2 절	노동관련 특별인권침해에 관한 특례	제 69 조~제 74 조
제 3 절	선원노동관련 특별인권침해에 관한 특례	제 75 조~제 80 조
제 4 절	적용제외	제 81 조
제 6 장	보칙	제 82 조~제 86 조
제 7 장	벌칙	제 87 조~제 88 조

는 인권구제절차(人權救濟手續)에 대하여, 제 5 장(제 66 조 내지 제 81 조)에서는 노동 관련 특별 인권침해(勞働關係特別人權侵害) 등에 관하여, 제 6 장(제 82 조 내지 제 86 조)에서는 보칙규정을, 제 7 장(제 87 조 내지 제 88 조)에서는 처벌규정을 각각 두고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표 1>과 같다.

이 법안의 목적은 제 1 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권침해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피해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구제와 그 효과적인 예방을 마련하는 한편, 인권존중의 이념을 보급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한 계몽적 조치를 강구하여 인권옹호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고, 법 앞에 평등을 보장하는 일본국헌법의 이념에 따라, 인권옹호에 관

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국가의 책무를 선언하였으며(제4조),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 대해 ... 인권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권침해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규정을 선언하고 있다(제3조).

#### 나. 인권침해의 범위

동 법안에서 말하는 인권침해란 “부당한 차별, 학대, 그 밖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제2조 제1항), 이를 세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부당한 차별적 취급

부당한 차별적 취급이란 (i)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직무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무에 종사하는 자의 입장에서 인종 등(인종, 민족, 종교, 성별, 사회적 신분, 문벌, 장애, 질병 또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부당한 차별적 취급, (ii) 업무에 대한 대가를 얻어 상품, 부동산, 권리, 용역 등을 제공하는 자의 입장에서 인종 등을 이유로 하는 부당한 차별적 취급, (iii) 사용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의 채용 또는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인종 등을 이유로 하는 부당한 차별적 취급 등을 말한다(제3조 제1항 제1호).

##### (2) 부당한 차별적 언행

부당한 차별적 언행이란 (i) 특정인에 대하여 인종 등의 특성을 이유로 하는 모욕, 성희롱 기

타 부당한 차별적 언행, (ii)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한 상대방의 뜻에 반하는 성적 언행 등을 말한다(제3조 제1항 제2호).

##### (3) 특정 상대방에 대해 우월적인 입장에서 하게 되는 학대(제3조 제1항 제3호)

##### (4) 차별조장행위

한편, 같은 조 제2항 이하에서는 차별조장행위(次に掲げる行為) 등의 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차별조장행위란 (i) 인종 등 공통적인 속성이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해당 특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것을 조장하거나 유도하기 위해 해당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해당 속성이 있다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문서의 배포,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공연히 적시하는 행위, (ii) 인종 등의 공통적인 속성이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해당 특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는 의사를 광고,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 2. 인권위원회

### 가. 의 의

법무부는 법안 제1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외국(外局)으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여, 이를 법안 제5조에 규정하였다. 동 규정에 의하면 인권위원회는 국가

행정조직법(国家行政組織法) 제3조 제2항의 규정<sup>14)</sup>에 따른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갖게 된다.

### 나. 구 성

인권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4인, 총 5인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3인은 비상근이다(제8조). 위원장 및 위원은 중의원(衆議院)과 참의원(參議院)의 동의를 얻어 내각 총리대신이 임명하는데(제9조 제1항), 이들을 임명함에 있어서 남녀의 비율이 각각 2인 미만으로 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제9조 제2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제10조), 심신이 병약하여 직무집행을 수행할 수 없는 등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파면되지 아니한다(제11조, 제12조).

한편, 인권위원회에는 예전 법무부의 인권옹호국을 폐지하고 이를 개편한 사무국을 두는데, 사무국 직원 중에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를 포함시켜야 한다(제15조). 사무국은 예전 법무국의 인권옹호부를 폐지하고 이를 개편한 지역기관으로서 지방사무소를 두고, 지방 법무국에 사무위원을 할 수 있다(제16조).

### 다. 업 무

인권위원회는 인권구제, 인권교육 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되고(제6조), 인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에게는 직권행사의 독립성이 인정된다(제7

조). 인권위원회는 매년 내각 총리대신을 거쳐 국회에 해당 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그 개요를 공표해야 한다(제19조). 인권위원회는 또한 내각 총리대신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회에 대하여 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제20조).

## 3. 인권옹호위원

### 가. 의 의

지역사회의 인권옹호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에 인권옹호위원을 둔다(제21조). 인권옹호위원은 인권교육, 인권상담, 인권침해에 관한 정보수집의 업무 외에 인권위원회에 위임된 인권침해에 대한 일반 조사 및 일반 구제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제28조).

### 나. 구 성

인권옹호위원은 시정촌장(市町村長)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인권위원회가 위촉한다(제22조 제1항, 제2항). 시정촌장은 인권위원회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 중에 해당 시정촌회의의 의견을 듣고, 인권옹호위원 후보자를 추천한다(제22조 제3항). 인권위원회는 시정촌장 등의 의견을 듣고, 시정촌장이 추천하는 자 이외의 책임자로 인권옹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제23조).



14) 행정조직을 위해 두는 국가행정기관은 성(省), 위원회(委員會) 및 청(庁)으로 그 설치 및 폐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인권옹호위원은 해당 직무에 관해 인권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제30조). 인권옹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인권옹호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제25조). 인권옹호위원에게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나, 인권옹호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제26조).

기존의 인권옹호위원과 동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권옹호위원과의 주된 차이점은 위원을 위촉하는 자가 법무대신에서 인권위원회가 되었다는 점과 해당 시정촌의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지는 자가 인권옹호위원이 된다는 국적요건을 없앴기 때문에(「인권옹호위원법」 제6조 제3항) 일본국민이 아닌 사람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점, 인권옹호위원이 비상근 국가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国家公務員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인권옹호위원법」 제5조) 등이다.

#### 다. 업무

인권옹호위원은 인권옹호위원협의회(人權擁護委員協議會)를 조직하고, 인권옹호위원협의회는 도도부현(都道府県)별로 도도부현 인권옹호위원연합회를 조직하고, 전국 도도부현 인권옹호위원연합회는 전국 인권옹호위원연합회를 조직하고 각 인권 옹호위원의 직무에 대한 소요사무 등을 시행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제32조, 제35조).

## 4. 인권구제절차

### 가. 총 칙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에 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상담에 응한다(제37조). 인권침해에 따른 피해를 받거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누구나 인권위원회에 인권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제38조 제1항). 인권위원회는 인권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성질상 관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사건이나 행위시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제38조 제2항).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에 따른 피해구제 또는 예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하고 적당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제38조 제3항).

### 나. 일반구제절차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에 의한 피해구제 또는 예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일반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제39조).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에 관한 피해구제 또는 예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관계 행정기관의 소개·소송경비 보조에 관한 알선 및 그 밖의 지원, 가해자 등에 대한 권고·교육 등 그 밖의 지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조정 등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제41조).

## 다. 특별구제절차

인권위원회는 부당한 차별, 학대, 차별 조장 행위 등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일반 구제 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제42조, 제43조). 여기에 해당하는 인권침해는 (i) 동 법안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부당한 차별적 취급, (ii) 부당한 차별적 언행 등,<sup>15)</sup> (iii) 폭행·음란행위·심리적 외상을 주는 언행 등의 학대,<sup>16)</sup> (iv) 언론기관이나 언론기관의 보도 혹은 그 취재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함부로 보도하고 그 사람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크게 해치는 등의 인권침해,<sup>17)</sup> (v) 전 각호에 규정한 인권침해에 준하는 인권 침해로 그 피해자의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해 피해자가 스스로 그 제거 또는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것 등이다.

인권위원회는 위에서 제시한 인권침해(부당한 차별적 취급, 부당한 차별적 언행 등 또는 학대. 단 아래 제시하는 노동분야에 있어서의 인권침해

의 경우는 제외) 또는 차별조장행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건 관계자에 대한 소환·심문, 당해 인권침해 등에 관계가 있는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요구, 당해 인권침해 등이 실제로 발생 또는 발생하였다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장소의 출입조사처분 등의 특별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제44조).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거나 또는 이 법안에 규정된 조치를 강구함에 있어서는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 또는 취재의 자유, 기타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하고, 언론기관 등에 의한 자주적인 해결을 지향하는 방안을 존중해야 한다.

인권위원회는 위원이나 사무국 직원에게 이 처분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인권위원회의 위원이나 사무국 직원에게 출입조사를 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위원 또는 직원에게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게 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 처분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해 인정된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 15) 여기에는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부당한 차별적 언행으로 상대방을 두렵게 하거나 당혹하게 하거나 크게 불편하게 하는 것, 성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을 두렵게 하고 당혹시키거나 혹은 크게 불편하게 하는 것이 포함된다(제42조 제1항 제2호).
- 16) 여기에서는 특히 학대의 주체에 대하여 세분하고 있는바, 첫째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행하는 학대이고, 둘째는 사회복지시설·의료시설 그 밖에 유사한 시설을 관리하는 자 또는 그 직원이 행하는 학대, 셋째는 학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관리하는 자 또는 그 직원이 행하는 학대 등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상의 아동학대, 배우자(사실혼까지도 포함) 중 일방이 행하는 학대,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동거자 등의 학대에 대해서도 열거하고 있다(제42조 제1항 제3호).
- 17) 「보도에 의하여 주목할 만한 사생활 침해(報道による著しいプライバシー侵害)」의 요건은 (i) 그 사람을 범죄 피해자 등으로 보도하는데, (ii) 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지나치게 보도하고, (iii) 그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성 범죄 피해자의 성명, 주소, 생활 경력 등을 낱낱이 폭로하는 기사와 사진을 게재·배포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法務省 홈페이지, 人権擁護法案に関するQ&A <<http://www.moj.go.jp/JINKEN/jinken83.html>> 참조.



## 라. 조정 및 중재

### (1) 조정 및 중재위원회

인권위원회는 특별인권침해(전 절의 인권침해부터 후술하는 노동분야의 인권침해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을 접수하고, 조정위원회 또는 중재위원회를 개설하고, 이것에 대한 조정 또는 중재를 수행한다(제45조). 이에 해당하는 조정과 중재에 참여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에 인권조정위원을 두고, 인권조정위원은 인권위원회가 임명한다(제48조 제1항, 제2항). 인권조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인권조정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제48조 제3항, 제5항).

### (2) 권고 및 그 공표

인권위원회는 특별인권침해가 발생하거나 실제로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특별인권침해피해의 구제 또는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이유를 묻고, 해당 행위의 중지 등 기타 피해 구제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맡아야 한다고 권고할 수 있다(제60조). 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권고를 한 경우, 당해 권고를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때는 그 취지와 함께 당해 권고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제61조). 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은 권고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열람하고 등초본(謄抄本)을 발급할 수 있고(제62조), 당해

인권침해에 대한 청구에 관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등 소송지원을 할 수 있다(제63조).

인권위원회는 차별 조장행위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이유를 붙이고, 해당 행위의 중지 등을 권고할 수 있다(제64조). 또한 인권위원회는 차별 조장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당해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 해당 행위의 중지 등을 청구할 금지소송(差止め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제65조).

## 5. 노동 관련 특별인권침해 등에 관한 특례

이 특례규정에는 노동 관련 특별인권침해와 선원노동 관련 인권침해의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사용자에 의한 부당한 차별적 취급이나 직장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차별적인 언행 등의 인권침해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후생노동대신(厚生労働大臣)이, 후자는 선박 관계 사업주에 의한 부당한 차별적 취급 및 직장에서 발생한 부당한 차별적 언행 등의 인권침해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대신(国土交通大臣)이 각각 일반조사, 조정, 권고 등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제69조). 노동 관련 특별인권침해와 선원노동 관련 특별 인권침해에 관한 특례, 현업 직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무원에 관해서는 적용을 제외한다(제81조).

## 6. 보 칙

이 법률이 시행되면서, 구제대상이 되는 자의 인권과 다른 사람의 인권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제82조), 또한 어느 누구도 인권 구제를 신청했다는 것 등을 이유로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않는다(제84조). 또한 인권위원회는 그 내부규율, 인권구제절차, 기타 소관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인권위원회 규칙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제85조).

## 7. 벌 칙

인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기밀유지의무(守秘義務)에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87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조사에 관한 처분을 위반한 자 및 조정위원회의 자진 출두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는 30만 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88조). 게다가, 과태료에 대한 처분은 「비송사건절차법(非訟事件手続法)」에 따라 당사자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18) 일간지 가운데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미디어 규제 조항과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부분을 비판하고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은 미디어 규제 조항 이외에, 인권 침해의 정의가 애매하다는, 인권위원회 권한이 강한 것 등을 비판, 이에 더하여 요미우리신문(毎日新聞)은 인권옹호위원으로 국적 조항이 없는 경우도 비판했다.

19) 2007年(平成19年) 11月23日付朝日新聞.

## Ⅲ. 법안의 전망

계속되는 반목과 갈등 속에서 「인권옹호법안」의 통과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부락해방동맹(部落解放同盟)은 동화입법의 만료에 따른 대체입법으로 동 법안을 여전히 강력하게 지지해 오고 있다. 특히 아사히신문사(朝日新聞社)에 동 법안의 입법에 대한 여론을 성립시키도록 강하게 압박해 왔으며, 2005년 정기국회에서는 아사히신문사의 의견에 동조하여, 관련 지면의 논조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기도 하였다.<sup>18)</sup>

당내에서 그 입지를 다지고 있는 코가 마코토(古賀誠) 자민당 선대위원장은 인권옹호법안이 차기 중의원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판단하고, 2008년 제 169회 정기국회에 법안을 다시 제출할 뜻을 밝힌 바 있었다.<sup>19)</sup> 또한 코가(古賀)파의 오타 세이이치(太田誠一) 중의원 의원을 자민당 인권 문제 등을 조사위원회의 회장으로 임명하고,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중의원 의원, 아오키 미키오(青木幹雄) 참의원 의원으로 법안 통과를 향해 연계를 가지고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이나다 토모미(稲田朋美) 중의원 의원을 중심으로 한 당내 소장파의 보수 의원은 전통과 창조 모임 등 스

터디 그룹을 통해 협력을 도모하며, 이 법안에 반대해 나가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야당인 민주당은 2005년 7월 자민당 집행부가 법안제출을 포기함에 따라, 같은 해 8월 1일 동 법안의 대안으로 「인권침해피해 구제 및 예방 등에 관한 법률안(人權侵害による被害の救済及び予防等に関する法律案)」(衆法第33号)을 제162회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같은 해 8월 8일 소위 우정해산(郵政解散)<sup>20)</sup>에서 심의미결(審議未了)로 폐안되었다. 이 우정해산 후 열린 제44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는 「우정 민영화 법안(郵政民営化法案)」에 반대한 의원은 자민당

집행부 내 의원의 조직이 크게 달라졌다. 이에 따라 「인권옹호법안」에 대한 추진과, 신중과 쌍방에 대한 자민당 내에서 조직도 변화했다.<sup>21)</sup>

특히 2006년 9월, 인권 옹호법안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가 내각 총리대신에 취임하면서 법안 재제출의 의지는 더욱 시들해지게 되었다. 신임 나가세 진엔(長勢甚遠) 법무대신 또한 “상황을 잘 조사하고 대응을 생각하겠다”며, 이러한 태도를 수용하였다. 또한 우정해산 후 자민당과 떨어져 있던 에토(衛藤) 중의원 의원 등 법안 신중과의 일부를 복당시켜 아베 총리의 생각과 가까운 의원



- 20) 우정 민영화는 고이즈미 내각이 목표로 삼은 주요 공약의 하나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도 이를 ‘행정개혁의 중심(本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1979년에 대장성 정무차관 취임 당시부터 우정사업의 민영화를 주장했으며, 미야자와 기이치 총리 재임시에 우정대신으로 있으면서도 제2차 하시모토 내각의 후생대신으로 있을 때에도 줄곧 우정 민영화를 주장했다. 민영화의 추진에는 미국에서 강한 요구를 한 것도 작용해, 2004년 10월 14일에 공포된 “일미규제개혁및경쟁정책이니셔티브에근거한일본국정부에의요망서(日米規制改革および競争政策イニシアティブに基づく要望書)”, 이른바 연차개혁 요망서에도 일본 우정공사의 민영화가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민영화는 행정 서비스의 저하로 연결된다는 주장도 강해, 야당은 물론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특정 우편국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우정사업간담회’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있었다. 결국 우정 민영화 관련 법안은 제162회 상국회에서 중의원에서는 가결되었지만, 2005년 8월 8일에 참의원에서 부결되었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민영화의 찬반 여부를 국민에게 묻는다고 주장하며, 중의원을 해산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를 ‘우정해산’이라 한다. 자민당 내의 반대파 중 일부는 탈당하여 신당을 결성했고, 9월 11일의 총선거에서는 여야의 득표율이 비슷했지만, 의석수는 여당이 압승하면서 이후 열린 특별국회에서 10월 14일에 같은 내용의 법안이 가결·성립되었다.
- 21) 신중과의 중심이었던 키우치(城内)의원, 에토(衛藤)의원 등이 낙선하였고, 히라누마(平沼)의원,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중의원 의원, 후루카와 요시히사(古川禎久) 중의원 의원이 자민당을 탈당하는 등 법안 신중과는 자민당 내에서 영향력이 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우정해산 후 자민당 집행부는 이 법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나카가와 히데나오(中川秀直)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国会対策委員長)은 “국회 대책위원회는 것은 여당에서 야당까지 국회에 의석을 가진 각 정당이 국회 대책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당의 위원회입니다” (2005년(平成17年) 9월 18일放送의「サンデープロジェクト」における発言)라는 발언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총리대신의 “인권옹호법안을 가능한 조기에 제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2005년(平成17年) 9월 29日の参議院本会議における、民主党の神本美恵子・参院議員による人權問題に関する質問に対する答弁)는 답변 등을 토대로 법안의 재제출을 계속 추진하였다. 한편 법안 추진과의 중심이었던 코가(古賀)의원도 우정 민영화 법안 중의원 표결에서 기권했기 때문에 당의 경고(戒告)처분을 받고 자민당 인권문제 조사회장을 물러나고, 지미 쇼자부로(自見 庄三郎) 중의원 의원, 구마시로 아키히코(熊代 昭彦) 중의원 의원들은 낙선하는 등 역시 자민당 내에서 영향력이 떨어졌다. 또 우정 민영화 법안에 찬성한 사람도 입각했기 때문에 당내 법안 심의에서 인권 옹호 법안에 대한 논의 자체가 저조하게 되었다.

을 자민당 내에 다시 들 방안도 채택되었다.

최근 돗토리현(鳥取県)에서 독자적인 인권변호제도를 창설하기 위한 「돗토리현 인권침해구제추진 및 절차에 관한 조례안(鳥取県人権侵害救済推進及び手続に関する条例案)」 심의가 이뤄졌던 예가 있었다. 이 조례안은 인권옹호법안을 참고로 하여 만들어지고, 2005년 9월 가결(可決) 성립 전후에는 현 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 결과 2006년 3월 이 조례의 시행을 무기한 중지하기로 결정한 이후 근본적인 검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일본 내의 정세 속에서 10년 이상 장기 표류하고 있는 「인권옹호법안」의 입법화 요구는 첨예한 논란과 함께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 준 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